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1나211373(본소), 2021나211380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대여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희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1. 12. 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3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가단100017(본소), 2020가 단10024(반소)
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

15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,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75,000,000원 및 그중 6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, 15,000,000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(피고가 항소취지에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반소에 관하여만 불복한 것으로 보며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김천수, 판사 안성민